



I. 서 론 (추진배경)

일선 시·군에서 지방세 업무 운영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체계적인 파악 및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하는 실정과 세무행정의 복잡성으로 인한 업무과증 등으로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개선하지 못하는 현실의 체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각 시·군별 세무부서의 문제점 전체를 파악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지방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과세자료의 경우 확보대상 기관이 다수이며 정형화된 자료수집을 위한 시스템이 없어 지방세 부과누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각 시·군 담당자별로 과세자료 요구에 의해 과세자료를 생성한 기관은 피동적으로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체제로 과세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재 지방세과세 현장의 실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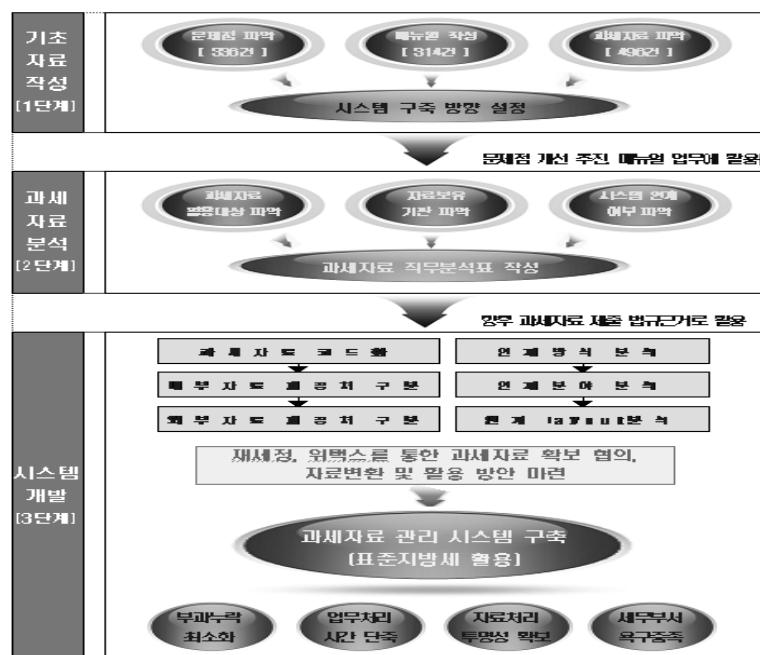


특히, 외부기관 과세자료의 경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우 과세자료 생산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생산기관에서는 제출근거 법령의 부재 및 비밀유지 등의 이유로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관리의 현실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과세자료별 매뉴얼 작성을 기초로 효율적 과세자료 확보 및 관리가 가능한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과세자료별 직무분석표를 작성하여 자료확보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과세자료의 확보 및 관리에 새로운 세무환경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과세자료 관리시스템이 구성되더라도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협조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개요 】



경기도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전반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및 외부과세자료 확보 방안 마련,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위하여 도와 시·군의 세무경험이 풍부한 세무공무원 42명을 중심으로 과세자료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집중적인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각 시·도 지방세담당 부서에 설명하고 지방세정인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자 한다.

II. 지방세정 운영의 현 실태

1.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 미흡

지방세 과세자료는 세목담당자별로 수동적으로 수집되고, 입력 시 담당자의 부주의 등으로 한번 누락되면 매년 정기분 부과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과세자료 확보 및 관리에 대한 정형화 된 매뉴얼이 없어 담당자 개인의 경험이나 능력에 따라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처리하는 실정으로 이로 인하여 과세기관별 과세자료 처리실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내 시·군의 외부과세자료¹⁾ 확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시·군당 평균 76건의 자료를 수집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은 190가지 이상, 일부 시·군은 20가지 정도의 과세자료만을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군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정형화된 매뉴얼에 의한 과세자료 확보 및 처리에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목별 평균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실태 】

(단위 : 건)

구분	계	도세	시·군세	비과세·감면	체납액	징수	세무조사
현재 과세자료 관리실태(A)	76	31	27	9	7	3	
확인이 필요한 과세자료(B)	277	120	81	35	26	15	
관리비중(A/B)	27.4%	25.8%	33.3%	25.7%	26.9%	20.0%	

※ 자치단체별 차이는 있지만 평균 27.4% 정도만을 수집·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 자료출처별 구분 : 내부자료(자치단체 존재자료), 외부자료(자치단체 외 존재자료)



2. 지방세분야 전산인프라 변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경우 1971년부터 여러 업체가 개발하여 보급한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각 시·군별로 운영의 차이가 많았으나, 2008년 전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공통된 시스템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확보 및 관리는 일부 자료의 경우 표준시스템에 연계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나, 아직 대다수의 과세자료가 통일화된 확보방법 및 처리시스템이 없어 과세누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료연계 등의 기반인 전산화는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세자료 확보에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지속되는 지방세분야 감사지적

경기도의 경우 2009년 행정안전부의 컨설팅감사에서 68,549건에 900억원에 이르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시·군에 대한 도 감사나 지도점검 시에도 매번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추징 등 감사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안전부 감사부서에서 2010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제도에서도 수많은 자료가 불 부합 자료로 표시되어 이에 대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항들 대부분이 과세자료의 파악 및 확보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현상으로 감사지적보다는 효율적인 과세자료의 확보 및 관리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 할 것이다.

4. 세무환경 변화에 대응 필요

매년 수차례의 지방세법령 개정 및 유권해석의 변경에 따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경우에도 동일사건에 대하여 담당별 해석의 차이가 있는 실정으로 관련법령 적용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아가 담당자별 업무노하우를 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세 부과·징수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세무환경에 따라 과세자료의 경우에도 자료파악에 새로운 기법 등이 필요함에도 예전 사례를 답습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시스템적 반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과세자료에 대한 확보 및 관리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의 근간으로 세무공무원으로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동시에 전국적인 사안으로 지방세 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과세자료 확보 및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III. 그간의 경기도 추진사항

1.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실태 현황파악

가. 지방세 과세자료 정리실태 현황파악 (2009. 11. 30) ----- 문제인식

시·군별 과세자료 확보실태를 파악한 결과, 시·군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으며 과세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제시함에 따라 「과세자료 관리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권역별 토론회 개최 (2009. 12월) ----- 공감대 형성

경기도 31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세정과장 및 주무담당을 대상으로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석자 모두가 과세자료 관리의 중요성을 공감하였고 외부과세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에 대하여 개선해 줄 것을 제시하였다.

【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개최 】





2. 과세자료 연구모임 추진 성과

가. 지방세 운영의 문제점 토의 및 개선방안 검토 (2010. 1월 ~ 6월)

일선 시·군에서 파악된 지방세 운영의 문제점 327건에 대하여 6개분야(도세·시군세·재산세·감면·세무조사·체납)로 나누어 검토하고 문제점별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으며, 그 중에서 중앙부처 건의과제와 법령개정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관계관을 초청하여 합동토론을 통하여 공동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지방세 운영상 문제점 검토결과 】

(단위 : 건)

구 분	소 계	개선방안 제시	시·군 자체개선	도·시·군 공동개선	중앙건의	법령개정	연찬회 토의과제
계	327	97	9	16	149	25	31
도 세	76	12	2	5	34	4	19
재산세	79	31	4	4	31	4	5
시군세	64	27	-	3	29	3	2
감 면	23	5	1	-	10	7	-
세무조사	17	3	-	1	12	1	-
체 납	68	19	2	3	33	6	5

연구모임에서 검토된 중앙건의 과제는 2010. 6월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를 하였으며, 자체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모임과 도 연찬회를 통하여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문제점 검토결과를 발간하여 시·군에 배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과세자자료 관리 연구모임 추진 】



나. 외부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검토 추진 (2010. 1월~ 진행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외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부과세자료의 경우 각 시·군별로 개별 확보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비효율적인 자료확보를 추진함에 따라 중앙부처의 감사 시 주요지적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임에도 확보를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에 과세자료 확보반을 운영하여 대상기관과 업무협의 및 자료 확보를 추진하였으나, 124개 기관의 207가지 과세자료 수백만건을 일일이 업무협의를 통하여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IT시대에 뒤떨어지는 업무처리 형태의 개선이 제기되었다.

【 지방세 외부과세자료 분석결과 】

(단위 : 건, () 기관수)

구 분	합계(A) A=B+C+D	수집 대상자료(B)			협의 필요자료(C)			확보 제외대상(D)		
		소계	도추진	시·군 추진	소계	도추진	중앙 건의	소계	기시행	불필요
합 계	207 (124)	155 (83)	135 (64)	20 (19)	24 (23)	16 (16)	8 (7)	28 (18)	19 (10)	9 (8)
취득세	47	29	21	8	13	10	3	5	4	1
면허세	125	112	106	6	2	1	1	11	9	2
재산세	9	3	2	1	4	1	3	2	2	
주민세	10	4	4		2	2		4	1	3
지방소득세	3	1	1		1	1		1	1	
체납관리	9	6	1	5	1			1	2	1
기 타	4				1	1		3	1	2

※ 연금관리공단의 소득 및 비과세 급여내역 요청 → 근거법령 부재 제출거부, 나머지 협의가 필요한 외부자료 생산기관 23개소는 답변조차 없이 미제출

다.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분석 (2010. 1월~7월)

지방세 부과·징수 전반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파악하여 과세자료별 자료 확보방법, 처리실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일괄 정리한 매뉴얼 313건(도세 78건, 시·군세 144건, 비과세·감면 41건, 세무조사 20건, 체납액 관리 30건)을 작성하여, 2010년 5월부터 실무부서에서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과세자료를 표준지방세전산에서 자료의 생산자로부터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자료의 유형, 자료생산 기관의 성격, 현재 유통되는 방식, 수신된 자료의 저장방식, 과세자료 생산자 시스템의 유무, 연결 가능성,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필드명, 실제 적용세목 및 개선할 과제 등 시스템 구축 전에 사전 파악해야 할 요소를 빠짐없이 분석한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이 「과세자료별 직무 분석표」 작성이다.

연구모임에서 마련한 「과세자료별 직무 분석표」 277건은 한건, 한건 곧바로 지방세 시스템에서 전산으로 구현하는 기본안내서가 되어 과세자료 분석표를 바탕으로 지방세 개발자는 즉시 이해하고 실제 구현할 수 있게 작성하였다.

지방세 과세자료는 방대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 하며 또 시간적으로 상호 변동하고 있음으로 금번 연구 후에 추가적으로 반영하거나 삭제할 자료도 생길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금번연구에서 제시하는 과세자료별 직무분석표는 향후 지방세 및 세정환경변화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방대한 분석작업을 위하여 42명의 연구모임원들이 새로운 지방세 환경변화 추진에 선봉에 선다는 마음가짐으로 4차에 거쳐 합동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모임의 각별 간사와 총무들의 경우 수차례의 소모임을 통해 어렵게 분석작업이 완성되었다는 점을 부연 설명하고자 한다.

라.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안) 마련 (2010. 5월 ~ 7월)

국세의 경우 종전 세무서에서 담당자가 세원관리를 하던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과세근거가 될 수 있는 각종 과세자료를 국세통합시스템(Tax Integration System, TIS)에 입력하여 집중 관리하는 세무행정의 과학화를 위한 과세자료 기반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또한, 종전 「행정기관의 과세자료 통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54종의 과세자료를 수집하다 1999. 12. 3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103종 2억 4천만건 (2004년 기준)의 과세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세자료 기반구축은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한계를 보완하여 과세누락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86조의2에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국세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로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늦은 감은 있지만 국세와 같이 지방세의 경우에도 개별법으로 「지방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어야 할 당연한 과제라고 판단하여, 경기도 과세자료 연구모임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과세자료 제출대상을 파악하고 과세자료별 직무분석을 통하여 서식 등을 작성하여 가칭 「지방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작성하였다.

과세자료의 확보 및 관리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세무부서 공무원은 없을 것이며, 법령의 미비로 과세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험이 없는 공무원도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은 역량을 결집하여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IV.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1. 시스템구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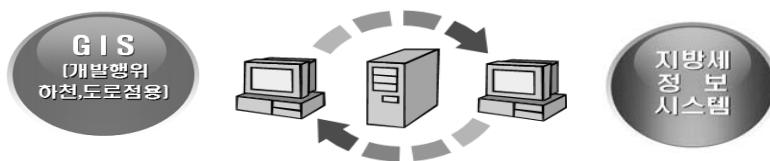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 내부와 외부에서 발생하는 과세자료를 재세정 또는 WeTax 등을 통하여 표준지방세시스템에 연계하여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과세자료를 챙기고 해당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이런 절차를 시스템화해서 담당자의 경력과 능력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자료를 획득하고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과세자료 발생 시부터 지방세 연계를 통해 과세누락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세밀하고 정확한 과세자료의 관리로 납세자의 권리 향상을 증진시킴은 물론 향후 복잡한 지방세 환경의 변화에도 능히 적응 할 수 있는 토대를 완성시키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다.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두 가지 접근방법이 제시 되었는데 하나는 업무분석을 통한 접근 방식으로 일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 하는 방법으로 이 방식은 당장 시급하고 현안 사항을 위주로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는데 지방세정보화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상대편시스템이 자료연계에 가능한 상태가 될 때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많은 과세자료를 연계시키는 데



는 부족한 점이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개별프로그램 양산을 유도하는 문제가 발생 될 우려가 있다.

【 경기도 광주시 면허세 과세자료 연계시스템 운영실태 】



추진이 어렵고 좀 방대하더라도 지방세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계된 모든 자료를 기준으로 지방세 전산에 접목시키는 방안으로 지방세 및 타 시스템의 변화에 능동적인 적응을 할 수 있는 방식인 모든 지방세 과세자료 중심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되었다.

【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안) 】



2. 시스템구축 방안

과세자료는 자료생산자(과세자료 생산기관)의 성격 등이 상이 하듯이 일관된 방식으로 표준지방세 시스템에 연계하기는 어려움으로 다음과 같은 연결방식으로 구분하고 시스템연결을 구현해 보기로 한다. 최선의 방식이 온라인 직접 연결이나 타 시스템의 구현방식 또는 지방세 과세의 주기 및 빈도 등을 고려 할 때 일괄 실시간연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연계방식을 기준으로 한다.

【 과세자료별 지방세 연계 분석 결과 】



현재 과세자료 관리 유형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연계 방향	
계	277	계	277
새울시스템 열람	36	연계확대	29
프로그램열람	12	새울시스템 연계	62
재세정 열람	4	외부프로그램연계	40
지방세-분배	6	WeTax 연계	146
지방세연계	16		
수기, 엑셀	203		

가. 과세자료 연계확대

기존에 이미 지방세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있는 타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연계는 되었으나 실제 업무담당자가 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함으로 연계 항목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스템으로는 주민전산시스템, 국세청시스템(사업자조회 등), 대법원시스템 등으로 주민전산의 경우 표준지방세에서 기본연계는 되고 있지만, 주소 변동 이력, 기타주소, 특수주소, 전화 번호 등은 연계되지 않고 있다. 또 국세 사업자조회 시스템도 사업자번호 조회까지 연계되고, 전화번호, 과거 사업이력, 소재지별 조회 등 이런 실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자료는 조회가 안 되므로 실무에서 과세에 필요한 항목을 더 추가하는 것이다.

나. 내부 연계(새울시스템 연계)

대부분의 시·군에서 표준지방세 시스템과 같이 존재하는 것이 새울 시스템이다. 이 새울시스템에는 지방세과세에는 꼭 필요한데 접근조차 못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 제일 큰 문제는 접근(열람)은 되더라도 지방세시스템에서 접근이 아닌 새울시스템을 통한 제한적인 열람이다. 담당자는 지방세와 새울시스템 2개를 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지방세 시스템에 입력해야한다.

일선 행정의 17개 실무 업무를 모아놓은 새울시스템, 그것도 대부분 시·군에서 지방세와 동일 서버



에 존재하는 시스템을 시스템 간 연계는 당연한 것임에도 이제 그 시작을 하려는 것이다. 새올시스템 외에 시·군 내부 운영 프로그램이 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지적 전산, 세외수입 등이 그것인데 이런 시스템도 열람이 아닌 지방세시스템과 직접연계가 필요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다. 외부시스템 실시간연계

표준지방세 시스템에 일부 구현되고 있는 대법원 등기열람, 국세청 연계 등이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국가 각 기관들 시스템과 각종 협회, 단체들의 시스템연계를 포함 한다.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별 공문을 보내고 전산자료 또는 출력물 형태로 수신된 자료를 담당자가 판단해 입력하는 일련의 과정을 시스템 간의 연계로 해결 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을 예로 들자면 지방세 압류해제 시 표준지방세압류해제 후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다시 압류해제를 하는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해 한 번에 할 일을 두 번에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분배 시스템을 통한 자료 분배도 포함 된다. 외부 기관의 자료를 상급기관에서 받아 시·군간 분배를 통해 과세자료로 변환하는 것인데 항시 시점 차이로 일선 시·군에서 곤란을 겪기도 한다. 이런 과세자료 분배가 아닌 실시간 시스템연계가 필요하다.

조금 더 발전적으로 생각해 보면 금융기관 실시간 열람이 있다. 시·군 담당자와 일선 금융기관 담당자가 과세자료 확보 및 제출로 겪는 곤란을 해결하는 것은 둘째 치고 실시간 금융계좌 열람은 체납의식을 완전히 극복시킬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라. 외부자료 WeTax 연계

과세자료의 생산기관 중에는 일반 사업자, 단체 등이 있는데 자체프로그램을 표준지방세전산에 연계하기 곤란 할 때 예를 들어 각종회원권 내역을 과세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별도의 시스템구축을 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태의 전산자료를 WeTax에 전송하여 각 과세기관이 취합하는 형태를 말한다. 주로 과세자료가 상시 발생하지 않고 전송 주기도 길 때 사용 할 수 있다.

3. 추진 상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과세자료 직무분석표를 통해 가능한 시스템 실시간 연계를 구현하자면 몇 가지 대두되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서는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법령 근거에 대한 문제점은 생략하기로 한다. 실제 시스템 구현 시 예상되는 문제점만을 다루기로 한다.

가. 시스템 구축관련 문제점

1) 과세자료 관리 시스템 서버

이론상 전산적인 실시간 연계는 항상 가능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그렇지 않다. 당장 하나의 서버안에 존재하는 새울시스템과 표준지방세 시스템간의 연계만 하더라도 몇 가지 만 실시간 연계할 경우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또 담당자 1인이 요구한 실시간 자료로 지방세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곧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서버의 운영이다. 서버의 규모, 설치비용, 장소, 관리주체, 운용인력 및 시스템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2) 과세자료 관리 시스템 운영

과세자료 관리시스템은 도내 31개 시·군의 세원 관리 시스템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얼마의 비용으로 설치 유지하고 누가 운영을 할 것인지 고려되어야 한다. 만일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별 추진도 어렵지만 또 다른 개별프로그램 양산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경기도를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되어야만 할 것이다.

3) 외부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협상 주체

지방세가 필요로 하는 과세자료는 실제 외부 기관들의 컴퓨터 안에 존재하는데 그 시스템을 열어 달라고 각 시·군에서 각자 요구하기에는 너무도 비생산적이다. 자료의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장이 있음에도 행정안전부가 연계 협상의 주체를 하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4) 연계 시스템 자료의 적합성 검증

새울시스템도 마찬가지의 경우인데 일선 업무 담당자가 자기 업무 프로그램에 정확한 자료를 넣지



않는 경우이다. 즉 시스템만 구축되어있고 실제 업무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세무부서에서 자료를 연계하려 할 경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또 세무부서는 사실과는 다른 자료를 보고 있음으로 정확한 과세가 아닌 착오과세를 유발 할 수 있다. 이는 새올시스템이 일선에 정착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인데,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새올시스템 사용자와 과세자료 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시스템사용자 관리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위에서 제시한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관련 추진 상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는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지방세원 관리센터」 설치가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관리센터 설치 주체를 중앙으로 일원화 할 것인가 아니면 시·도별로 개별 설치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으나, 과세자료 확보의 효율성 및 관리의 정확성을 위하여 중앙단위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방세원 관리센터 설치 주체별 장·단점 비교 】

구 분	장 점	단 점
중앙 단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상주체 단일화로 인한 자료 수집의 효율성 증가 자료수집 및 관리의 일관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단위 조직 및 시스템 설치 필요 사안별 신속한 자료 수입의 어려움
사도 단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안별 신속한 자료수집 협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자료 관리기관과 자료 확보 협의 어려움 상존 표준화·정형화된 자료수집 곤란 자치단체별 자료요구에 따른 제공기관 불편 증가

나.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인식 부족

과세자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지방세담당 공무원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시스템의 근본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확보 및 관리인 점과 전산인프라에 맞추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집중 교육하여 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상시모니터링과 비교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행정안전부 감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시모니터링 제도와 유사한 시스템이 아니나는 질의가 있었으나, 상시모니터링 제도는 지방 세 과세자료 간 상호연계를 통한 효율적 과세자료 정비이며, 구축되어진 과세자료를 활용한 실무자의 비리개연성 예방에 목적이 있다 할 것이나,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은 정형화된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를 통한 부과누락 제로화, 과세자료 확보 및 처리기간 단축 등 업무효율성 극대화, 업무처리 사항 지속 관리로 감사 등에 효율적 대비, 전임자의 등의 업무노하우 지속 발전이 가능한 지방세 운영의 근본인 과세자료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상시모니터링 제도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V.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1. 세입 조기확보 및 업무효율성 증대 효과

각 자치 단체마다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는 세입확보이다. 주민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이 세입이고, 그 세입의 원천이 바로 세원 즉 과세자료이다. 과세자료 관리 시스템은 이제까지 부과·징수에만 쓰였던 관심을 세원으로 돌리게 할 것이며, 미래지향적인 세원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래를 보장한다.

아울러, 신세원 개발 등 세제개편을 통한 세입증대에도 항상 반대하는 기관 및 주민의 저항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철저한 세원관리를 위한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만이 세원확보에 큰 결실을 가져올 것이다.

가. 과세누락 방지를 통한 세입 조기확보

지방세의 경우에는 각 각의 과세자료가 여러 세목, 여러 세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세입추계는 실제 시스템 구축 전에는 지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재산세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과세자료는 78건으로 파악 되는데 과세대장에 관계된 자료, 세율 및 감면에 관련된 자료, 부과고지에 관련된 자료 등이다. 또한 타 세목에 연관된 자료 또한 있음으로 한 건의 과세자료가 얼마의 세입으로 연결 되는지 파악은 어렵다.

일선 지방세 부과업무 실무담당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세입 기대 예상치를 묻는 조사²⁾에 대하여 대다수의 담당자는 6%~10% 내외의 세수 상승을 예측하였다. 시·군 실무담당자의 예측을 토대로 추계할 경우 2009년도 경기도 세입 11조 7,734억원 중 비교적 부과누락이 없는 레저세와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을 제외할 경우 9조 3,000억원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근거로 실무자 예측결과를 대입하면 매년 5,580억원에서 9,300억원의 세입 조기확보 효과를 예상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검증하는 자료로 2009년 행정안전부 컨설팅 감사에서 86개 감사자료로 932억원을 추정하였으나, 86개 감사자료 중 반 이상은 세무 내부 자료를 크로스 체크하여 세무전산 내부에 일관 되지 않은 자료로 부터의 세액산출이 이루어진 감사였다. 이번 과세자료 관리시스템의 과세자료는 컨설팅 감사에서 제출된 크로스체크 감사가 아닌 순수 과세기초 자료임을 감안해 보면 277개 과세자료를 시스템적으로 구축 시 예상되는 경기도내 지방세입 조기확보액은 연간 약 6,500억원 이상으로 추정 된다.

나. 업무효율성 증대로 인한 예산절감

과세자료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현행 수기로 통보 되고 있거나 전자문서를 통한 전산화일로 수집되고 있는 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투입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자료작성을 위한 재료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부과담당자의 경우 평균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투입되는 비중이 전체업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세자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1주일 평균 8시간의 업무경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주군을 예로 학원 및 교습소 신규·변경 현황자료 3개월분(100건)을 일괄 요청하여 부과 누락된 면허세 자료를 발췌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행정비용은 수기통보의 경우 74,600원과 전산자료일 경우 53,1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2) 4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각자치 단체 지방세 부과액 대비 6%~10% 상승을 예상한 답변이 48.3%, 11%이상이 31%, 세수3%미만 증가가 18.8%, 세수 3%~5%증가 예상이 1.9%

【 과세자료 관리관련 행정비용 산출 】

계		수기 통수보 수집		전자문서 엑셀, 전산화일 수집		과세자료시스템활용	
		74,600원		53,100원		없음	
		건당 748원		건당 532원		없음	
인건비	구분	투입시간	비용	투입시간	비용	투입시간	비용
	제공기관	1시간	17,700원	30분	8,800원	없음	없음
	수집기관	3시간	53,100원	2시간30분	44,200원	없음	없음
재료비	구분	출력량	비용	출력량	비용	출력량	비용
	제공기관	5매	100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집기관	5매	100원	5매	100원	없음	없음
우편비	제공기관	1,800원		없음		없음	
	수집기관	1,800원		없음		없음	

산출근거 : - 인 건 비 : 7급 공무원 연소득 34백만원 시간당 17,700원

- 재 료 비 : A4 용지 1매당 10원 + 인쇄비 10원

- 우 편 비 : 등기료 1,750원 + 우편봉투 50원 = 1,800원

- 투입시간 : 제공기관은 공문서작성 및 자료 작성시간 반영, 수집기관은 공문서 작성, 자료출력 및 입력 시간 반영

경기도 전체 주요 세목별 과세건수는 35,867천여건으로 제공기관으로부터 수기통보 및 엑셀, 전산화일 등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는 자료건수를 추계한 결과 3,193천건으로 위 예시에 따라 예산절감 비용을 계산할 경우 17억원에서 2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도 주요 세목별 과세자료 수집 관리 비용 추계 】

(단위 : 건, 천원)

구분	과세건수	수시조사 및 관리건수	수기 통수보 수집 시 비용	엑셀, 전산화일 수집 시 비용
계	29,343,216	3,193,210	2,388,517	1,698,784
취득세	1,407,691	117,111	87,599	62,303
면허세	1,049,714	387,518	289,863	206,159
등록세	6,150,881	615,088	460,085	327,226
공동시설세	3,307,286	330,729	247,384	175,947
주민세	6,169,420	616,942	461,472	328,213
재산세	7,413,331	741,333	554,517	394,389
도시계획세	3,733,432	373,343	279,260	198,618
사업소세	111,461	11,146	8,337	5,929



또한 과세자료시스템이 구축되면 경기도내 연 50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을 이용하여 현황과세를 위한 현지 확인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활용한다면 추가 세입증대 효과도 예상된다.

2. 지방세 담당공무원에게 과세자료 관리 시스템

「과세자료 관리 시스템」은 또 다른 업무 관리 도구인가?라고 실무자들은 말 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여러 가지 관리도구들 누락세원의 관리 실적제출, 분기별 자료관리 실적제출, 각종 감사 등 이런 사항을 근본적으로 필요 없게 만든다. 그것 또한 과세자료 관리시스템의 지향점이다. 더 나아가 과세자료별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전임자 등의 업무노하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 처리기간의 단축 등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큰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3. 납세자에게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일선에서 흔히 듣는 질책 중의 한마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걸 왜 몰랐냐?”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구차하게 설명할 수도 없었다. 과세자료 관리시스템은 바로 그런 납세자가 한번만 신고해 주면 그 다음 모든 시스템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이는 지방세 부과담당 공무원의 과세자료 관리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한 불만해소 등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감소될 것이므로 납세자의 지방세정 신뢰를 향상시키며 납세의식에 기반 한 시민의식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된다.

VI. 결 론 (건의사항)

1. 지방세 운영의 문제점 개선 지속 추진 ----- 운영상 개선

지방세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실무자가 피부로 느끼는 운영상 사소한 것부터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적인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경기도내 시·군별로 문제점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최대한 파악하여 형태별로 분류하였다. 파악된 문제점에 대하여 실무경험이 많

은 연구모임의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문제점 총 327건에 대하여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건의 조치하였으며, 자체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자체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실무자의 능력에 따라 업무처리가 다르며 같은 업무도 시·군별, 실무자별로 다르게 처리하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실무자별로 새로운 인식과 정보를 획득하는 계기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된다. 지방세 실무를 담당하는 세무담당 공무원은 여기에 수록된 모든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현재 지방세 실무환경을 새로운 시각에서 시스템적인 사고와 체계를 갖춰나간다면 새로운 세무환경에 적극 적응할 수 있는 세무전문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세무환경에 변화에 따라 지방세 운영상 문제점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경기도에 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개선에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제도상 개선

경기도에서 과세자료별 업무매뉴얼 및 직무분석표 등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은 모두 끝냈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스템에 연계할 것인가 문제이다.

최선의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전국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며, 경기도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전국 세무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추진한다면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방세원 관리센터」 설치는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과세자료 관리시스템은 지방세 전산화 도입과 동시에 검토되었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군별 전산화 추진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실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의 문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방세 운영의 근본 중에 근본임을 감안하여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걸 맞는 시스템구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3.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관련 법령 제정 추진 ----- 법률적 개선

국세의 경우 이미 10년전에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과세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세자료 기반구축은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한계를 보완하여 국세 일실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맞지도 않는 국세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요청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제출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늦은 감은 있지만 국세와 같이 지방세의 경우에도 개별법으로 「지방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어야 할 당연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경기도 연구모임에서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요청하며,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 입법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



< 참고자료 >

〔자료 1〕 지방세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예시)

관리번호	중앙(재산) - 001					
시·군명	수원시	부서명	팔달구 세무과	제출자	김병래	연락처 228-7317
과제명	공시지가 미 산정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장 정리			분야 사군세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지가산정 필지는 매년 5.31 기준으로 공시지가 산정자료에 의거 재산세 부과 ○ 미 산정 필지(2009년 8,763필지 : 도로, 공원, 국유지등)는 수기로 산정 후 정리 ○ 지번 분할 및 합병 토지는 수기 산정 후 과세대장 정비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산정 필지수가 과다함으로 수기 산정의 어려움 ○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이후 미 산정 토지에 대한 자료 정비 후 정기분 부과 시 적용하여야 하므로 자료대사 ⇒ 자료정리에 대한 시간적 제약이 매우 큼 ○ 부정확한 공시지가 산정 및 과년도 공시지가 사용으로 인한 과세자료의 오류 상시 존치 ○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의한 비과세 세액자료 오류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공시지가 조회/수정(1539)화면에 표준지 항목을 표시하여 지목에 따른 세액 자동산정, 일괄적으로 공시지가를 조정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 ○ 공시지가 미 산정 토지에 대해 전체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 추진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효율성 증대 및 오류발생 최소화 					
참고자료						
관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연구모임 토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부서에 의뢰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음 (klis 산정)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식이 stand alone에서 웹방식으로 변경된 이후 비준표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공시지가 산정부서의 협조에 의해서 산정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 단기적으로, klis의 비준표와 표준지를 불러와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 ○ 장기적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국유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필지 산정하도록 개선 					
연구모임 토의결과	자체개선	도-시·군 공동개선	중앙부처 건의	법령개정 추진	연찬회 토의과제	
			○			
연구결과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의 표준지와 비준표를 불러와 지방세정보시스템 안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 ○ 중장기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지를 포함한 전 필지를 산정하도록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프로그램 개선 및 법령개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 : 개별공시지가 산정프로그램 개발 - 장기적 :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협의하여 국유지를 포함한 전필지 산정 방안 마련 					



(자료 2) 지방세 과세자료 매뉴얼(예시)

관리번호	도세-1							
분야	도세	세목	취득세	과제명	지목변경 부과 관리			
처리주기	월 1회			담당자	도세팀	관리자	도세팀장	
과세자료 확보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자료 확보 : 지목변경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 : 청내(✓), 청외(관공서)(), 청외[외부기관]() - 제공부서 : 사군 직제부서 - 요구방법 : 유선(), 공문(✓), 재세정(), 지방세시스템() - 제공형식 : 텍스트(), 엑셀(✓), 한글(), 출력물(✓) ○ 지목변경 과세표준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과세자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목변경 일자지번변경 전후 지목지목변경 사유, 분할합병지번면적 - 변경 전후 토지특성조사표/토지가격비준표, 인근 유사지역 표준지, 지적도, 토지대장 ○ 건축물 신축에 따른 지목변경일 경우 건축물 착공일, 사용승인일 ○ 현행 과세자료 확인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세정 : 과세자료연계 → 건축물연계자료 조회(사용승인기간 입력) 후 조회 : 출력물 - 지방세 화면 1598(재세정 연계 토지 대사) : 재산세 정리를 위한 화면임 - 소유권 변동, 집합소유권변동, 지번변동, 지목변동, 면적변동 자료를 재세정을 연계하여 제공함 - 지방세화면(1598) 하단의 재세정 연계를 통해 자료를 구축하면 엑셀 변환이 가능함 (2001년 자료부터 제공) 						
과세자료 처리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자료 대사(지목변경 누락자료 및 과세표준액 산정 적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목변경 자료를 제공받아 건별로 취득세 신고여부 조회 - 사실상 지목변경 자료 확인 - 변경된 지목이 공시지가에 반영되었는지 여부(토지특성조사표 참조) - 재산세(건물분) 부과자료 및 기준 신고여부 : 기준 건물의 존치여부 및 신고여부 확인 - 재산세(토지분) 과세자료 확인 : 전답 등 농지 분리과세 → 별도 종합합산변동여부 - 항공사진 : 과년도 항공사진으로 해당필지의 현황자료 확인 ○ 신고납부 시 확인사항(도세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서류 : 준공서류(건축물, 개발행위), 토지이동명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상 지목변경일, 재산세 대장의 토지 분 세율과 상이할 경우 근거서류 - 세액이 소액부인 경우 : 소액부인 경우에도 지방세 입력을 통해 근거자료 확보 - 준공(건축물, 개발행위) 시 착공 일을 확인하여 공시지가 차액 기산일 적용 - 사실상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확인 						
과세자료 처리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행 연계세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세분야(등록세) : 소유권이전 시 지목 확인[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 등의 자료와 착공일을 비교하여 실제 용도 확인하여 등록세 세율 결정(농지는 저율임)] - 시세분야 : 재산세(토지분) 대장 정리 및 세율변경 						
향후개선 필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자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지방세 화면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재세정에서 사용하거나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지방세 화면을 수정하여 활용하도록 함 - 제공되는 자료가 제공자의 편의가 주어진 것으로 과세권자 입장에서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지방세 화면에서 지목변경 검토여부를 체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과세자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지번(법정동, 대장구분, 본번, 부번, 동, 호), 변경 전후 지목, 지목변경 사유, 분할합병지번 등 - 지목변경 취득세 점검확인 여부 ○ 과세자료 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화면에서 취득세 신고여부를 전산대시를 통해 미 신고자를 검출할 수 있도록 조치 ○ 신고납부 시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년도 공시지가 자료를 확인할 방법 강구 : 현재 KLIS 시스템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함 - 지방세와 연계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항공도면 활용 : 과년도 항공도면 일괄 구축 활용(과년도의 경우 구입비 저렴함) ○ 병행 연계세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토지분) 대장이 실시간 정리가 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자료를 연계하여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
전산개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데이터 제공 방법 : 재세정(엑셀) → 실무자 ○ 향후 방향 : 실무자 입장의 지방세시스템관리 체크되도록 전산개발 필요
자료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부서 지적팀





(자료 3) 지방세 과세자료별 직무분석표(예시)

과세자료 명	3. 학원 및 교습소 현황
--------	----------------

기초현황					
자료유형	관련기관	자료 요구방법	자료제공 및 수집형태(현재)	제공주기 및 요청주기	
단독자료 (✓)	청내 ()	유선 ()	재세정 ()	수시 (✓)	
보조자료 ()	청외(관공서) (✓)	공문 (✓)	지방세 ()	월 ()	
지원자료 ()	청외(외부기관) ()	재세정 ()	한글 ()	분기 ()	
		지방세 ()	엑셀 (✓)	반기 ()	
			출력물 (✓)	년 (✓)	
			텍스트 ()		

제공부서 시스템				
제공부서 시스템 관리여부	제공기관	부 서	연 락 처	시스템연계 가능여부
	교육청	학무과		여(✓) 부()
○ 시스템 구축여부 : 전국통일(✓), 시군개발(), 미구축(한글(), 엑셀(), 기타())				
○ 시스템 관리형태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시스템의 업무처리 형태 : 내부관리전산망				
○ 향후 시스템 개선계획 : 해당없음				
자료제공 관련 협의가 필요한 경우	○ 협의당사자 : 중앙부처(✓), 경기도(), 사군(), 기타()			
	○ 중점 협의 내용 : 학원 및 교습소 자료의 제세정연계			
과세자료 샘플확보	○ 과세자료 샘플 확보 여부 : 여(✓), 부()			
	○ 여(✓)인 경우 자료 형태: 엑셀 및 출력물			

과세자료 형태	
제공 항목 (지방세 메뉴번호) (재세정 메뉴설명)	○ 필드명 : 해당없음
필요 항목	○ 필드명 : 학원명, 위치, 설립자, 전화번호, 학원의 종류, 등록일, 변경일, 변경종류, 면적
개선 항목	○ 개선분야 : 공문으로 통보된 과세자료를 재세정과 연계하여 수시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필요

업무적용 형태	매뉴얼 연계번호	시군세-34
적용세목	○ 세목 : 면허세	
지원되는 과세자료	지원되는과세자료 명	○ 과세자료 명 : 학원 및 교습소 현황
	활용형태	○ 학원 및 교습소 현황: 현황을 통한 면허세 정기분 및 수시분부과 및 대사작업 실시
업무처리형태	면허세	○ 업무명 : 면허세 부과(종별 구분 필요) - 교육청으로부터 면허 부여, 변경, 취소 등 공문을 받아 신규면허에 따른 부과 및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미납시 추징하고 사업장소변경 대표변경 등 변경사항에 대한 과세대장 정비 및 면허 취소자 대장 삭제 정비
업무처리상 문제점 및 어려운 점	○ 문제점 : 면허세 정기분이 부과시 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 민원발생이 잦아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됨 ○ 어려운점 : 폐업시 사업자등록말소후 교육청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 대장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최초 작성자	○ 사군 : 이천시, 성명 : 광대섭, 전화번호 : 644-2214	

자료조회 화면

Copyright© 1998-2008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통보자료 화면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이천교육

경기도이천교육청

수신자 (경유)	수신자 증조		
제목	살풀보습학원 면허 부여 및 바둑왕학원 취소사항 통보		
1. 구 기관의 무공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29조에 의거 면허 부여 및 취소사항을 불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학원명 (교습소명)	종류 (부여,변경,취소)	세부내용	비고
살풀보습영어학원	부여	신규설립	2010.04.08
바둑왕학원	취소	자진폐원	2010.04.08

불일 1. 면허부여 사항통보서(살풀보습영어학원) 1부.
2. 면허취소사항통보서(바둑왕학원) 1부. 끝



(자료 4) 지방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10. 9. .

제출자 : 정부

제안이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투명한 선진세무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이 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지방세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등으로 정함(안 제4조).
- 나. 이 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세과세자료는 인가·허가에 관한 자료, 영업·생산·판매실적에 관한 자료 등의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에 한하며, 지방세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이 법에 의하여 지방세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의무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10조).
- 라. 지방세과세자료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납세자의 사생활이나 비밀유지 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과세자료에 대한 납세자의 열람청구권과 정정청구권을 입법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
- 마. 이 법에 의하여 수집된 지방세과세자료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법률 제 호

지방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과세에 필요한 지방세과세자료(地方稅課稅資料)의 제출·관리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와 근거과세를 실현하고 투명한 선진세무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세를 말한다.
2. “지방세과세자료”란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과세자료센터”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제73호에 따른 지방 세원 관리센터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세과세자료의 제출과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지방세과세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 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5조(과세자료의 범위) ①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특허·등기·등록·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판매·생산·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보험급여·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
 5. 과세자료제출기관 및 과세자료제출기관의 회원·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시설물 현황에 관한 자료
- ②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과세자료의 제출) ①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과세자료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과세자료센터에서 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 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과세자료의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수집·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잘못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한 후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관리 및 운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과세자료의 통보) ①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과세자료를 요구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과세자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과세자료센터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연계가 불가한 과세자료는 전산매체에 담아 제공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공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열람 등) ① 납세자는 해당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의 과세자료에 잘못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그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잘못이 명백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없이 과세자료를 수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열람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① 세무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세법 제6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벌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과세자료로부터 적용한다.